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1일,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3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6월 9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관계법령 및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안 제9조제2항)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따른 요건 추가 (안 제14조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 나. 검토의견

#### 1) 개정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관계법령 및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안 제9조 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2021. 5. 18) 잦은 평가 시행시 대행업체의 서류제출 등 평가 피로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0일 또는 15일)이 너무 짧아, 피평가업체가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간을 개정함.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따른 요건 추가 (안 제14조제2항)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평가 방법,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